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2. 4 선고 2023나36652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2. 4 선고 2023나36652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9. 8 선고 2023가단10900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병연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빛

담당변호사 이민하

변론 종결2024. 9. 25.

판결 선고2024. 12. 4.

제1심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9. 8. 선고 2023가단109009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C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20. 5. 20.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41,111,436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1,111,43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 1) 원고는 2023. 2.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피고의 주소지로 이 사건 소장 부분을 발송하였고, 피고는 2023. 6. 13. 이를 직접 수령하였다.
- 2) 제1심법원은 2023. 7. 26. 피고의 주소지로 무변론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제1심법원은 2023. 8. 7. 이를 발송송달하였다.
- 3) 제1심법원은 2023. 9. 8.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고, 같은 날 및 2023. 9. 21. 피고의 주소지로 판결 정본을 발송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제1심법원은 2023. 10. 12. 이를 공시송달하여 2023. 10. 27.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 4) 피고는 2023. 12. 21.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제1심판결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는 바람에 피고는 제1심판결 선고 사실을 알지 못했고,

원고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 정본을 2023. 12. 8. 송달받고서야 비로소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항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부분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서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는지 여부, 출석한 변론기일에서 다음 변론기일의 고지를 받았는지 여부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바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담하는 것이다. 한편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사정은 상소를 추후보완하고자 하는 당사자 측에서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다21188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이 사건 소장 부분을 직접 송달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판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하여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는 당사자인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는바,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하였다거나 그 밖에 제1심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결국 제1심판결의 송달 효력이 발생한 2023. 10. 27.로부터 불변기간인 항소기간 14일을 초과한 후에 제기된 피고의 항소는 소송행위 추후보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결론

피고의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황중연

판사김경년

판사이종욱

별지